

기분 좋은 변화,
활짝 웃는 아산

2014. 6.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목 차

■ 채무상환기금(기획예산담당관)	1
■ 통합관리기금(기획예산담당관)	9
■ 재난관리기금(안전관리과)	17
■ 자활기금(사회복지과)	25
■ 여성발전기금(여성가족과)	33
■ 노인복지기금(경로장애인과)	39
■ 체육진흥기금(체육육성과)	45
■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기업지원과)	53
■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자원순환과)	61
■ 식품진흥기금(위생과)	69
■ 농어업발전기금(농정과)	77

채무상환기금

기획예산담당관

채무상환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조례 제정일 : 2000년 9월 25일(제391호)
 - 설 치 년 도 : 2001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348	2,274	706	2,562	2,436	126	

II. 분석결과

1. 총 평

-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는 각종 채무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 2013년 2,274백만 원의 일반회계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했으며,
- 각 실과에서 차입한 채무를 채무상환기금에서 통합관리하여 채무발행 및 상환계획과의 연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채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백만원,%)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200	2,200	100	2,274	2,274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차입금이자상환(1,810백만 원) ○차입금원금상환(390백만 원)	○차입금이자상환(1,810백만 원) ○차입금원금상환(390백만 원)	100%
'13년	○차입금이자상환(1,884백만 원) ○차입금원금상환(390백만 원)	○차입금이자상환(1,884백만 원) ○차입금원금상환(390백만 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일반회계 채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채무발행 및 상환계획과의 연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채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각종 채무의 상환재원 마련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기타 채무의 원리금 상환	1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년	해당 없음	
	'12년	해당 없음	
	'13년	해당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3년 사업비 (백만 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차입금 이자상환	1,884	일반 채무의 통합관리	상
② 차입금 원금상환	390		상
합 계	2,274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상·하수도의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개발사업의 기타특별회계의 채무상환은 특별회계 재원으로 충당하고, 일반회계 채무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채무상환기금을 조성하여 원리금을 상환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각종 채무의 채무상환기금을 통한 통합 관리

2010년도까지 각종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일반회계에 예산 편성하여 채무 차입부서에서 원리금을 상환하였으나, 2011년부터 채무상환기금에서 통합관리 함으로써 채무관리의 효율성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무분별한 채무발행을 억제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원리금 상환을 통한 통합적 채무관리 도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수 입	합 계	2,196,341	%	2,832,077	%	2,980,846	%
	전입금	1,800,000	82.0	2,300,000	81.2	2,300,000	77.16
	예치금회수	368,514	16.8	479,341	16.9	632,577	21.22
	이자수입	27,827	1.2	52,736	1.9	48,269	1.62
지 출	합 계	2,196,341	%	2,832,077	%	2,980,846	%
	예치금	479,341	21.8	632,577	22.3	706,416	23.7
	차입금 원리금상환	1,717,000	78.2	2,199,500	77.7	2,274,430	76.3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예치금/합계)

통합 관리 기금

기획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조례 제정일 : 2007년 1월 5일(제678호)
 - 설치년도 : 2008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75	275	7,500	223	223	-	

II. 분석결과

1. 총 평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일반회계에 융자함으로써 건전 재정유도 및 기금 활용의 효율성 증대
- 경기침체 장기화로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조성액 75억원을 일반회계의 시급 사업에 융자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할 수 있고, 각 기금의 예탁금리를 시금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수준으로 지급하여 각 기금별 적립액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음
- 우리 시 6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는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93	293	100	275	275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일반회계예탁(7,500백만 원) ○예수금이자상환(293백만 원)	○일반회계예탁(7,500백만 원) ○예수금이자상환(293백만 원)	100%
'13년	○일반회계예탁(7,500백만 원) ○예수금이자상환(275백만 원)	○일반회계예탁(7,500백만 원) ○예수금이자상환(275백만 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일반회계의 시급 사업에 조성액 75억 원을 융자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할 수 있고, 각 기금의 예탁 금리를 시금고 1년 만기 정기 예금 수준으로 지급하여 각 기금별 적립액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각종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	-일반회계 예탁(재정융자)	1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년	해당 없음	
	'12년	일반회계 용자(금고간 이자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충청남도
	'13년	해당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3년 사업비 (백만 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일반회계 예탁	7,500	각 기금 여유자금 통합관리	상
② 예수금 이자상환	275		상
합 계	7,775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이외의 여유자금을 시중 은행의 저축상품 예치 시의 이자보전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재정융자)하고 있으며, 각 기금별 예탁금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예 탁 액	비 고
합 계	7,500	
재난관리기금	2,800	
자 활 기 금	700	
노인복지기금	1,000	
여성발전기금	500	
체육진흥기금	500	
농어업발전기금	2,000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통합관리기금은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반드시 존치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각종 기금의 설치목적과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 용자해 줌으로써 전체적인 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성 확보에 노력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수 입	합 계	187,636	%	292,637	%	274,640	%
	예치금회수	131	0.1	136	0.1	138	0.1
	이자수입	187,505	99.9	292,501	99.9	274,502	99.9
지 출	합 계	187,636	%	292,637	%	274,640	%
	예치금	136	0.1	137	0.1	140	0.1
	예수금 원리금상환	187,500	99.9	292,500	99.9	274,500	99.9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예치금/합계)

재 난 관 리 기 금

안 전 관 리 과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조례 제정일 : 2005년 6월 7일(제608호)
 - 설치년도 : 1998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375	1,531	7,076	2,691	2,321	370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집행실적 : 1,531백만 원
 - 염화칼슘 및 수방자재 구입 재료비(259백만 원)
 - 재해예방 방재시설물 정비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료(923백만 원)
 - 풍수해 및 설해대책 응급장비 구입(90백만 원)
 - 재해예방 방재시설물 정비 도 보조사업(248백만 원)
 - 재난안전상황실 면진시설 자산취득 도 보조사업(11백만 원)
- 자연·사회재난 등 복잡 다양한 재난의 증가 및 그 규모가 복잡·대형화됨에 따라 기금 수요가 다양화와 증가 추세에 있음
- 가축전염병(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기금사용 및 집중호우로 인한 연립주택의 성토부분 축대가 붕괴되어 응급복구 예산을 활용한 응급

조치(사면 보호조치) 시행으로 2차 피해 예방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21	2,067	68	2,266	1,531	6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복구비(재료비) (342백만 원, 1식) ○ 응급복구(시설비및부대비) (2,479백만 원, 1식)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150백만 원, 1식) ○ 자산및물품취득비 (50백만 원, 1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복구비(재료비) (105백만 원, 1식) ○ 방재시설물정비사업 (1,869백만 원, 49개소)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44백만 원, 1식) ○ 재난대응 제설장비구입 (49백만 원, 1식) 	68%
'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복구비(재료비) (346만 원, 1식) ○ 응급복구(시설비 및 부대비) (1,690백만 원, 1식) ○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백만 원, 1식)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100백만 원, 1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복구비(재료비) (259백만 원, 1식) ○ 응급복구(시설비 및 부대비) (1,182백만 원, 1식) ○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백만 원, 1식) 	68%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효율적인 기금운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으며, 특히 재해 응급복구·재해예방사업·설해대책 장비·수방자재구입·재난예경보시설 정비 등 선제적 재난대비태세 확립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아산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등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 사전대비 보수정비 - 재해예방 연구 용역 -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 재난원인분석 등 조사 - 재난 피해자 이주지원	- 목표사업 완료 - 사업실적 없음 - 목표사업 완료 - 사업실적 없음 - 사업실적 없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풍수해·설해대비 물자 비축관리, 재해예방시설물 정비, 풍수해 등 응급복구, 풍수해저감대책 수립 등 재난발생시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등 재난대응 태세 확립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년	재난관리기금 법정기준 미확보	
	'12년	해당 없음	
	'13년	해당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3년 사업비 (백만 원)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제설재 및 수방 자재 구입	346	여름철 풍수해 및 동절기 설해 대비를 위한 자재를 확보 비축 하여 필요시 즉시 활용가능토록 비축관리	상
② 긴급대응 응급 복구비	150	자연재해 등 피해발생시 즉시 응급복구로 2차 피해예방(예비)	상
③ 응급복구 및 장비 임차료	260	풍수해 및 폭설로 인한 피해발 생시 즉시 응급복구로 2차 피해 예방(대상지 확정)	상
④ 재해예방 방재 시설물 정비	800	집중호우시 침수를 예방하고 원 활한 우수배수를 위한 배수시설 정비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우기전 정비완료	상
⑤ 방재시설물정비 인적재난예방 사업(보조)	180	풍수해 사전대비 정비가 시급한 방재시설물에 대한 도 기금보조 금과 시 기금 활용 신속히 정비	상
⑥ 재해예경보시설 설치 및 정비	200	재해예방을 위한 경보시설(강우 측정, 방송, 영상, 전광판, 진가 속도계측기 등) 신설 및 정비로 재난정보 취득 및 전파	상
⑦ 감염성·가축전 염병확산방지 등	100	전염병·가축전염병 확산방지 및 긴급대응 등 응급조치 시 활용	상
⑧ 재난대응장비 구입	130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장비 (제설, 통신, 상황유지 등)구입 즉시 재난대응태세 확립	상
⑨ 풍수해저감종합 대책수립	100	풍수해로 인한 침수지역 발생시 침수흔적을 도시화하여 향후 예 방대책에 활용	상
합 계	2,266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시 출연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이 조성되며 도 기금 보조사업은 부담률에 의하여 각 50% 부담
- 기금의 수입재원은 법률에 의거 요율로 정해져 있고, 기금설치목적달성 및 안정적 조달을 위하여 당해 연도 법정적립액 산정을 위하여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난관리기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늘어나는 재난예방 수요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기금의 존치는 물론 확충이 필요하고
- 매 년도별 법정적립금을 초과하여 재난의 예방적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날로 증가하는 다양한 분야(사유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안전조치가 어려운 경우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기금을 활용) 재난수요에 기금의 활용범위 확대.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수 입	합 계	2,762,390	%	5,499,353	%	5,807,702	%
	전입금	1,447,000	52.5	3,549,000	64.5	1,997,028	34.3
	보조금	136,500	4.9	90,000	1.7	127,000	2.3
	예치금회수	1,051,224	38	1,615,815	29.4	3,432,065	59.1
	이자수입	127,666	4.6	244,538	4.4	251,610	4.3
지 출	합 계	2,762,390	%	5,499,353	%	5,807,702	%
	비용자성사업비	1,143,029	41.3	2,013,972	36.6	1,429,031	24.6
	기본경비	-	-	50,210	0.9	102,497	1.8
	예치금	1,615,815	58.5	3,432,065	62.4	4,276,174	73.6
	기타지출	3,546	0.2	3,106	0.1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예치금/합계)

자 활 기 금

사회복지관

자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조례 제정일 : 2001년 1월 10일(제 403호)

- 설치년도 : 2001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64	104	1,164	35	123	△88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

i) 비용자성 사업비 : 84,445,560원

- 희망키움통장 추가 매칭금 : 연 676명, 72,400,000원 지급

-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 연 111명, 11,410,360원 지급

- 전세점포 임대 신용보증비용 : 635,200원

ii) 용자성 사업비 : 20,000,000원

- 아산지역자활센터 식품건조사업단, 외식사업단 전세점포 임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에 근거해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운용하는 기금으로

-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등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 기금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110	104	9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	
'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키움통장 추가 매칭금 : 40명, 12개월 48백만 원 -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 10명, 12개월 12백만 원 - 신용보증비용 : 10백만 원 - 전세점포임대 : 20백만 원 - 자활기업 등 사업자금 용자 : 30백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키움통장 추가 매칭금 : 연 676명, 72,400,000원 지급 -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 연 111명, 11,410,360원 지급 - 전세점포 임대 신용보증비용 : 635,200원 - 전세점포 임대 : 20,000,000원 	95%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아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8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2와 제26조5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자활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 자활기업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지원금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자산형성 지원사업 -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상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년	해당없음
	'12년	해당없음
	'13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3년 사업비 (백만 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자활기업 사업자금대여	20	저소득층의 자립 도모	상
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사업	90		상
합 계	11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03년 8월 아산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기금 용자, 아산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이 폐지되면서 자활기금으로 통합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용자금 회수금 및 예탁금 이자 등으로 재원 조달 중 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자활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며 자활사업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꾸준히 적정한 규모의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수 입	합 계	349,307	%	404,539	%	568,259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3,351	1	875	0.3	630	0.1
	예치금회수	328,018	93.9	349,308	86.3	404,539	71.2
	이자수입	17,938	5.1	35,767	8.8	39,717	7
	기타수입	-	-	18,589	4.6	123,373	21.7
지 출	합 계	349,307	%	404,539	%	568,259	%
	비용자성사업비	-	-	-	-	84,445	14.9
	융자성사업비	-	-	-	-	20,000	3.5
	예치금	349,307	100	404,539	100	463,814	81.6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예치금/합계)

여 성 발 전 기 금

여 성 가 족 관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조례 제정일 : 1998년 6월 3일(제268호)
- 설치년도 : 1998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59	-	1,056	30	25	5	

II. 분석결과

1. 총 평

-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사회적으로 복지사업 확대와 여성 복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기금사업 수요가 다양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늘어나는 사업 수요에 안정적·신축적인 지원을 위함

2. 사업운영의 성과

-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	-
'13년	-	-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아산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관련 시설설치 및 운영 지원 -여성사회교육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조성 목표액 달성 완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	해당 없음
	'12	해당 없음
	'13	해당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 권고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3년 사업비 (백만 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여성권익증진사업 ② 여성관련 시설설치 및 운영지원	-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기금조성(조성완료)
- 2014년부터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여성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여성의 권익 증진 및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수 입	합 계	223,324	%	296,673	%	555,796	%
	전입금	50,000	22.4	50,000	16.8	230,000	41.4
	예치금회수	156,994	70.3	223,324	75.3	296,673	53.4
	이자수입	16,330	7.3	23,349	7.9	29,123	5.2
지 출	합 계	223,324	%	296,673	%	555,796	%
	예치금	223,324	100	296,673	100	555,796	10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예치금/합계)

노인복지기금

경로장애인관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조례 제정일 : 1995년 6월 22일(제147호)
 - 설 치 년 도 : 1995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40	20	1,145	32	20	12	

II. 분석결과

1. 총 평

- 대한노인회 아산시 지회 운영비(20백만 원)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복지증진 기여
- 어르신들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0	20	100	20	2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질 향상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운영비지원 (20백만 원, 1개소)	○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운영비지원 (20백만 원, 1개소)	100%
'13년	○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운영비지원 (20백만 원, 1개소)	○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운영비지원 (20백만 원, 1개소)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대한 노인회 아산시지회 운영활성화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복지 증진 및 노후생활 안정 도모	-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운영지원	1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년	해당없음	
	'12년	해당없음	
	'13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3년 사업비 (백만 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운영지원	20	어르신 복지향상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노인의 사회참여 및 여가생활 활성화 등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지원을 하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금 및 기금이자 수입으로 운용

6. 향후 조치계획

- 기금 설치 목적 달성 및 기금 지원사업의 안정적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및 노후생활 안정 도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1		'12		'13	
수 입	합 계	123,734	%	145,008	%	164,968	%
	예치금회수	98,259	79.4	103,734	71.5	125,008	75.8
	이자수입	25,475	20.6	41,274	28.5	39,960	24.2
지 출	합 계	123,734	%	145,008	%	164,968	%
	비용자성사업비	20,000	16.2	20,000	13.8	20,000	12.1
	예치금	103,734	83.8	125,008	86.2	144,968	87.9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예치금/합계)

체 육 진 흥 기 금

체 육 육 성과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조례 제정일 : 1996년 7월 1일(제184호)
 - 설 치 년 도 : 1996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673	-	673	20	-	20	

II. 분석결과

1. 총 평

- 국민체육진흥의 목적아래 우리시 체육저변확대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시 체육회 및 산하 가맹경기단체의 육성을 도모하고 체육 꿈나무 우수선수 발굴육성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해 향후 일정금액(20억)까지 적립 후 사업추진 계획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	-
'13년	-	-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정도	비고
아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아산시 체육발전과 인구의 저변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 아산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년	해당 없음	
	'12년	해당 없음	
	'13년	해당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예: 신속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3년 사업비 (백만 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체육진흥사업 ② 우수선수발굴·육성	-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을 신속하게 가능하게 함	중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우수선수 발굴육성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통한 체육인의 저변 확산과 시 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육성을 통한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시비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적립되고 있으며, 2013년말 현재 673백만 원을 적립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본 기금은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자 매년 해당연도 일반회계 예산(출연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도로 기금조성을 실시하여 향후 일정금액(20억 원)이상 적립을 목표액으로 하되 10억 원 이상 적립 이후부터 이자발생액으로 집행 개시 계획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수 입	합 계	131,101	%	150,641	%	173,492	%
	예치금회수	116,081	88.5	131,101	87.0	150,641	86.8
	이자수입	15,020	11.5	19,540	13.0	22,851	13.2
지 출	합 계	131,101	%	150,641	%	173,492	%
	예치금	131,101	100	150,641	100	173,492	10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예치금/합계)

중 소 기 업 경 영 안 정 기 금

기 업 지 원 과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조례 제정일 : 1997년 10월 31일(조례 제246호)
- 설치연도 : 2001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51	51	1,300	44	44	-	

II. 분석결과

1. 총 평

- 충청남도(도 기업지원과)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아산시 소재 기업체
 - '12년도 111개 업체 30,714백만 원에 대하여 639,900천 원에 대한 이자보전
 - '13년도 88개 업체 24,800백만 원에 대하여 524,500천 원에 대한 이자보전
-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수도권 규제완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정에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큼.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8	48	100	51	51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111개 업체(48백만 원)	○ 111개 업체(48백만 원)	100%
'13년	○ 88개 업체(51백만 원)	○ 88개 업체(51백만 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아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소기업체에 저 리자금 융자 지원 으로 경영안정 및 기업 활동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 육성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이차차액 보전방식, 저리자금 지원 (대출금리 중 1.75~2%의 이차차 액 보전)	중소기업 자금난 해 소에 많은 도움이 됨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 조성액 정기예금 이자 전액을 사업비로 집행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 도모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년	해당 없음	
	'12년	해당 없음	
	'13년	해당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3년 사업비 (백만 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중소기업 저리 자금 지원	51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기업활동 활성화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으로 하고 있으며, 아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의거 충청남도지사(도 기업지원과)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하고 있음
- 충청남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15개 시·군에서 재원을 조달(총 93억 원 아산시 13억 원)하여 관리·운용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을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저리자금 용자가 가능하여, 지방의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어 기금은 계속 존치 운용되어야 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1		'12		'13	
수 입	합 계	1,340,978	%	1,347,894	%	1,351,057	%
	예치금회수	1,300,000	97	1,300,000	96.5	1,300,000	96.2
	이자수입	40,978	3	47,894	3.5	51,057	3.8
지 출	합 계	1,340,978	%	1,347,894	%	1,351,057	%
	비용자성사업비	40,978	3	47,894	3.5	51,057	3.8
	예치금	1,300,000	97	1,300,000	96.5	1,300,000	96.2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예치금/합계)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조례 제정일 : 1997년 7월 28일(제233호)
 - 설 치 년 도 : 2011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907	542	1,475	970	1,935	△965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실옥4통 주민공동 소득사업(400,000천 원)
 - 배미1통 마을회관 신축사업(100,000천 원)
 - 주민화합잔치(12,000천 원)
 - 건강문화센터 사용료(22,678천 원)
 - 협의체운영비(7,586천 원)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으로 마을 소득사업, 주민화합잔치, 협의체운영에 사용되며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집행률이 미진함.
- 지속적으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숙원사업과 주민복리 및 주민화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금년도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00	29	2.9	1,727	542	31.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마을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추진으로 소각시설로 인한 주변마을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삶의 질 향상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사업(35백만 원, 1식) ○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30백만 원, 250명) ○ 주민숙원사업비 (935백만 원, 1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사업(3백만 원, 1식) ○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26백만 원, 250명) 	2.9%
'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사업(20백만 원, 1식) ○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30백만 원, 1식) ○ 주민숙원사업비 (500백만 원, 1식) ○ 도시가스공급사업 (1,177백만 원, 1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사업(7백만 원, 1식) ○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22백만 원, 1식) ○ 주민숙원사업비 (500백만 원, 1식) 	31.3%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실적이 저조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아산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을 도모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 -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 주민숙원사업	31.3%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주민 간 갈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움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년	해당 없음
	'12년	해당 없음
	'13년	해당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업명	'13년 사업비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주민지원사업	1,727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존치하여야 함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분	사업명	금액	비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공고에 약속한 사항인 주민숙원사업비 30억 원의 6년간 균분지원과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를 매년 출연금으로 조성

- 기금의 수입재원은 법률에 의거하여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로 정해져 있고 기금설치 목적달성 및 안정적 조달을 위하여 당해연도 법정적립액 산정을 위하여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법률 및 조례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의 보상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그 목적이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존치가 필요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수 입	합 계	502,619	%	1,139,755	%	2,017,681	%
	전입금	500,000	99.5	628,647	55.2	858,647	42.5
	예치금회수	-	-	491,438	43.1	1,110,723	55
	이자수입	2,619	0.5	19,670	1.7	48,311	2.5
지 출	합 계	502,619	%	1,139,755	%	2,017,681	%
	비용자성사업비	4,281	0.8	25,990	2.3	534,678	26.5
	기본경비	6,900	1.4	3,042	0.3	7,587	0.4
	예치금	491,438	97.8	1,110,723	97.4	1,475,416	73.1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예치금/합계)

식 품 진 흥 기 금

위 생 관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조례 제정일 : 2002년 4월 17일(제444호)
 - 설치년도 : 2002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65	41	309	84	37	47	

II.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소형찬기 제작지원(5,700개), 모범음식점 신규 표지판 설치(13개소), 아산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59명, 9회), 아산시 외식업지부 자율지도원(6명, 12회), 식품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배부(500부), 휴게음식점 친절교육 지원(1회), 식중독 홍보물 제작(2,000부)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자율지도원 감시를 통해 위생사각 지대를 없애려고 노력하였으며, 식중독 저감화를 위해 홍보물 및 교육을 실시하여 “13년도 식중독 발생 제로화 달성”
- 기금의 활용에 있어 모범업소지원 위주로 이루어지다보니 정작 취약업소에 기금 활용이 저조한 면이 있었음. 다양한 사업발굴을 통하여 기금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 주민의 건강과 식품위생의 질적 향상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시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4	45	53	57	41	7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문화개선사업(30백만 원) ○ 모범업소지원 사업(20백만 원 100개소) ○ 교육홍보 사업(16백만 원, 1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문화개선사업(12백만 원) ○ 모범업소지원 사업(18백만 원 112개소) ○ 교육홍보 사업(5백만 원, 100명) 	53%
'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감시원 등 활동비(14백만 원) ○ 모범업소지원 사업(20백만 원) ○ 교육홍보 사업(23백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감시원 등 활동비(14백만 원) ○ 모범업소지원 사업(19백만 원) ○ 교육홍보 사업(8백만 원) 	72%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진흥기금) 아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 운용조례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대한 수준향상을 위하여 아산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용자사업 8.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i)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

- 모범음식점 신규 표지판 제작(13개소)
- 모범음식점 소형찬기 지원(112개소/5,700개)

ii) 소비자 위생감시원·자율지도원활동 지원 :

- 소비자 위생감시원·자율지도원활동지원(13,400천 원)

iii) 음식문화개선운동 및 시민식품 수준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

- 식품안전 매뉴얼 제작(1회/500부)
-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1회/2,000부)
- 휴게음식점 친절교육 강사비(300천 원)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	해당 없음	
	'12	해당 없음	
	'13	해당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3년 사업비 (백만 원)	이 유	불가피성 정도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모범업소 지원사업	14	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의 거 기금의 재원조성 특이성과 사 용목적의 명확한 규정으로 기금 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및 관리가 필요	상
소비자 및 자율지도원 활동지원	20		상
교육홍보사업	23		상
합 계	57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8,960천 원(13년도)	
타 기금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진흥기금의 주 수입은 식품위생업소의 과징금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위반업소에서 얻은 수입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과 교육 홍보 등 식품영업자가 관계법령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기여 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 주민의 건강과 식품위생의 질적 향상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시민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위생관리 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수 입	합 계	344,637	%	331,714	%	349,372	%
	보조금	28,522	8.3	16,050	4.8	16,711	4.8
	예치금회수	274,655	79.7	284,310	85.7	284,521	81.4
	이자수입	5,796	2.7	5,866	1.8	8,666	2.5
	기타수입	35,664	10.3	25,488	7.7	39,474	11.3
지 출	합 계	344,637	%	331,714	%	349,372	%
	비용자성사업비	60,327	17.5	47,193	14.2	40,830	11.7
	예치금	284,310	82.5	284,521	85.8	308,541	88.3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예치금/합계)

농 어 업 발 전 기 금

농 정 관

농어업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조례 제정일 : 2004년 12월 28일(제592호)
 - 설 치 년 도 : 2005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2,230	-	8,327	2,264	-	2,264	

II. 분석결과

1. 총 평

- 본 기금은 아산시 농어업인 및 농업법인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업소득의 향상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목표액(100억 원) 미달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FTA 등 국내외 여건변화로 인한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금임
- 지방자치단체 및 농·축협 등 생산자 단체 출연금과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수입액의 50%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
- 2015년까지 사업개시 목표액(100억 원)을 달성하여 농어촌 소득증대 및 영농신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의 개발사업, 품목별로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 및 친환경 육성사업 등 농어촌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	-
'13년	-	-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아산시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	농어업인 및 농업법인의 소득향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어촌 소득증대 및 영농신기술 개발을 위한사업 2.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의 개발사업 3. 품목별로 균형있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4.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사업 5.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6. 기타 농어촌 진흥을 위한사업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1년	해당 없음	
	'12년	해당 없음	
	'13년	해당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해당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3년 사업비 (백만 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농어촌 소득증대 및 영농 신기술 개발사업 ② 수출작목 개발사업 ③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④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	농어업인 및 농업법인의 소득향상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아산시 농지부전부담금 수수료 수입액의 50% 이상과 지방자치단체 및 농·축협이 출연금으로 조성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DDA, FTA, TPP, 쌀 관세화 등 악화되는 농업환경에 농어업인과 농업 법인을 보호하기 위한 1차적인 안전장치로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 등 농림 전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농어업인과 농업법인의 선제적 보호
- 2015년까지 사업개시 목표액(100억 원)을 달성하여 농어촌 소득증대 및 영농신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의 개발사업, 품목별로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사업 및 친환경 육성사업 등 농어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수 입	합 계	2,743,542	%	4,097,157	%	6,327,331	%
	전입금	550,000	20	1,200,000	29.3	2,000,000	31.6
	예치금회수	2,098,229	76.4	2,743,543	67	4,097,051	64.7
	이자수입	95,314	3.6	153,614	3.7	230,280	3.7
지 출	합 계	2,743,543	%	4,097,157	%	6,327,331	%
	예치금	2,743,543	100	4,097,157	100	6,327,331	10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예치금/합계)